해양경찰법 해설서











지난 65년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해양경찰.

2019년 「해양경찰법」을 통해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안심하고 헤엄치는 아이들 풍요로운 어족자원으로 웃음 짓는 우리 어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바다

•

•

「해양경찰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CONTENTS

발 간 사 · · · · · · · · · · 0	4
제1장. 제정 배경과 구성 · · · · · · · · · · · · · · · · · ·	6
제1절. 「해양경찰법」의 역사 · · · · · · · · · · · · 0	8(
제2절. 세부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1	13
제3절. 제정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1	18
제4절. 외국의 해양경찰기관 조직법 · · · · · · · · 2	24
제2장. 구성 체계와 의미 · · · · · · · · · · · · · · · · 2	26
제1절. 「해양경찰법」 구성체계 · · · · · · · · · · · · · · · · · · ·	28
제2절. 「해양경찰법」 제정의 의미 · · · · · · · · · 2	29
제3장. 조문별 해설서 · · · · · · · · · · · 3	4
제1장. 총 칙 · · · · · · · · · · 3	36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 · · · · · · · · · 4	18
제3장. 해양경찰청 · · · · · · · · · · · · · · · 7	71
제4장. 해양 안전 확보 등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9	90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 · · · · · · 9)7
부 칙 · · · · · · · · · · · · 10)6
제4장. 부 록 · · · · · · · · · · · · 11	0
부록1. 「해양경찰법」 조문 · · · · · · · · · · · · · 11	12
부록2.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안) 11	19
부록3.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안) 12	21

발간사



1953년 영해경비와 어업자원보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이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2019년 8월 20일, 창설 66년 만에 「해양경찰법」이 공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된「해양경찰법」에는 법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양경찰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요구가 해양경찰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을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규정하여 해양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실전경험을 갖춘 청장이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정부조직법」에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해양경찰은 「존중·정의·소통·공감」의 4대 가치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新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자기주도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5大 해양부조리 근절·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해양경찰의 "4대 브랜드 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선·수중 글라이더 등 첨단장비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발전 "비전2030 계획"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경비·구조역량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주요 정책은 앞으로 「해양경찰법」을 통해 더욱 발전되어, 세계일류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과 직원이 「해양경찰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법」에 대한 역사, 추진 배경, 제정의 의미, 각 조문의 입법취지, 해설, 질의 등을 수록한 〈해양경찰법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해설서가 「해양경찰법」과 해양경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다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해지길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해양경찰청장 건 현생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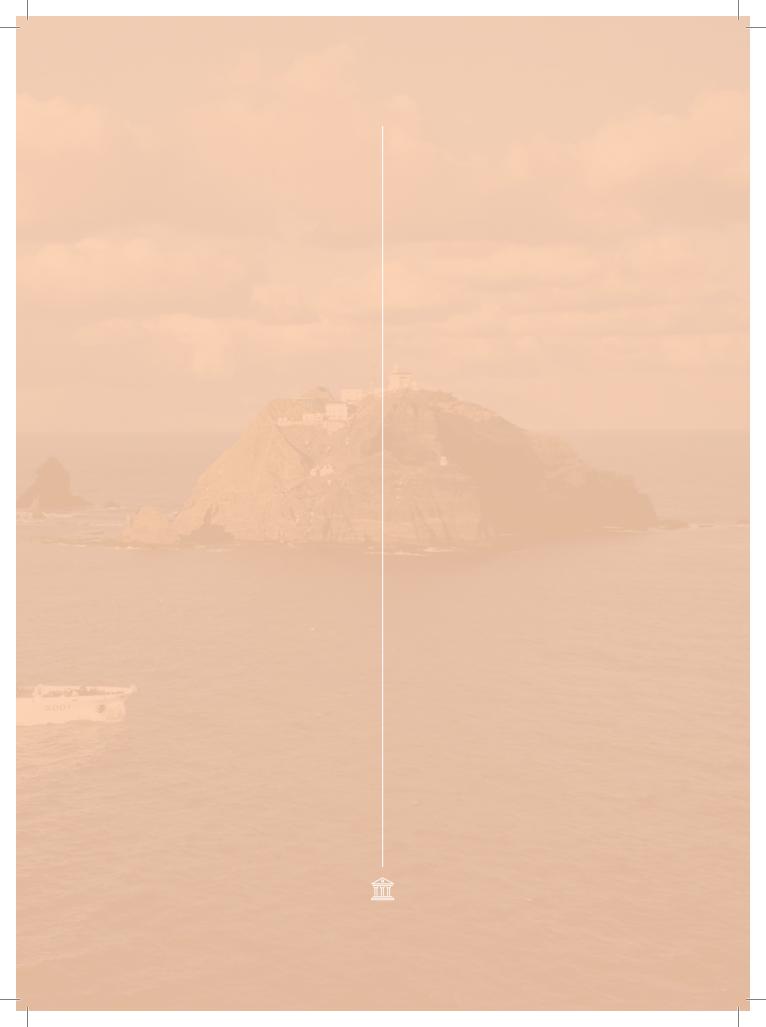
제정 배경과 구성

제1절. 「해양경찰법」의 역사 _ 08

제2절. 세부 추진 경과 _ 13

제3절. 제정 추진 배경 _ 18

제4절. 외국의 해양경찰기관 조직법 _ 24



제 1 절

「해양경찰법」의 역사

● ● 해양경찰청 조직 근거 법령 변천史



1. 해양경찰의 태동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맥아더 라인에이 철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극에 달했다. 우리해양의 천연자원과 어업자원 보호가 시급하게 되자,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고 60mile의 해역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선인 평화선을 설정했다. 이후 휴전상태인 1953년 8월 30일엔 북방한계선(NLL)을 정립했다. 그럼에도 일본 어선들은 전쟁직후 해상치안이 혼란한 틈을 타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불법어로 행위를 일삼았다.

^{01 1945}년 9월 미국 극동군 사령관 D.맥아더가 일본 주변에 선포한 해역선으로 이 선부터 근해어업은 일체 금지되었으며, 이 선을 넘어 포경과 참치를 조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되었다.

⁰² 천연자원 개발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 포하고 60마일의 해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선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선'이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해군이 민간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므로 해양주권선 경비임무는 경찰이 담당하여 수행하라는 지시를했다.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창설된 해양경찰대는 1953년 12월 23일 부산항 해양경찰대 기지에서 발대식을 갖고 해양경찰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해양경찰대 발대식(1953, 12, 23,)

2. 초기의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의 역사에서 법률 수준의 조직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1962년 4월 3일 해상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대설치법(법률1048호)」이 제정되면서 사법권이 강화되고 장비와 인력이보강되었다.

이 법에서는 해양경찰대가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관할수역 내의 범죄수사와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어업자원 보호 등에 한정하여 제한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었던 종전과는 달리, 어업



법률 제1048호 「해양경찰대설치법안」 국무회의 자료(1962, 4, 3,)

자원 보호는 물론 간첩의 해상침투 방지, 밀수·밀항자 단속, 평화선상의 관할수역 경비와 조난선박의 구조, 항로표지의 보호 등 거의 모든 해상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것이었다.

● ● 「해양경찰대설치법」 제정 이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밀수는 고질적인 사회범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초기 해양경찰대(해양경비대)는 수산자원 보호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정한 선박에 밀수품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도 현행범 또는 확증이 드러난 범죄행위 외에는 함부로 수색을 할 수 없었다.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양경찰대설치법」을 제정하였고, 광범위한 사법권을 부여 받은 해양경찰대는 밀수범죄가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해상범죄 검거및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였다.

⁰³ 해군에서 사용하던 181톤급 AMC 소해정 6척을 인수하였고, 해양경비임무는 조선해양경비대와 해군을 거쳐 새로 창설된 해양경찰대로 이관되었다.

창설 이후 10년 가까이 열악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소속 기관마저 오락가락하며 운영되던 해양경찰대가 「해양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임무를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1973년 1월 15일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법」개정으로 「해양경찰대설치법」은 폐지되었고 해양경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해양경찰대설치법」폐지 이유 -

「해양경찰대설치법」이 10여 년 만에 폐지된 것은 해양경찰의 요인이 아닌, 당시의 정치상황적 원인에 따른 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1972.10.17.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단되었다.⁰⁴

즉, 1972년 11월 유신헌법 통과에 따른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으로 1973. 1. 15.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부칙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에서 「해양경찰대설치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심의 · 의결 등 절차 없이 국무회의만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북한의 도 발에 대응하고 대통령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3. 「경찰법」 제정과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1991년 5월 31일, 정부는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을 제정하였다.

기존 내무부장관 소속의 해양경찰대는 경찰청장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직은 「경찰법」에 명시되었다. 해양경찰의 조직이 비록 「경찰법」 내에 근거를 두게 된 것이지만,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경찰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규정된 것에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법전(1991)

한편, 「경찰법」에서는 경찰청장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두고, 해양경찰청 산하에는 해양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 해양경찰의 임무는 「경찰법」 제3조가 규정한 경찰의 직무, 즉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

^{04 1972.10.17.}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단되었다.

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경찰법」内 해양경찰청 조항

제2조(경찰의 조직) ③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해양경찰 청을 두고 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해양경찰서를 둔다.

제5장 해양경찰

제19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되,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 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차장) ① 해양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해양경찰서장) ① 해양경찰서에 해양경찰서장을 두되. 해양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다.
- ③ 해양경찰서장소속하에 해양경찰지서를 둘 수 있다.

제22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하부조직 ·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 별도의 조직법 제정은 좌절

1996년 8월 8일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시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창설 이후 43년만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하지만 「경찰법」에 기재된 '해양경찰청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삭제되었고, 독립 외청으로 지



해양수산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1996. 8. 8.)

위가 격상됨과 동시에 별도의 조직법이 제정되었어야 했으나,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해양경찰의 조직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 ● 별도의 독립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 -

경찰청 소속이던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해양경찰의 특수성,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자적인 입법은 시대적·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5. 마침내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다.

이후 해양경찰은 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내부적으로는 법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외부적으로도 국회대응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원만하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경찰이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법 제정을 재추진한 결과, 마침내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양경찰법이 법률 제1651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세부 추진 경과

1. 「해양경찰법」 제정 노력

1996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기존 경찰청에서 분리되면서 해양경찰에 관한 규정도 「경찰법」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경찰의 직무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통해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 ●「정부조직법」 ―

제43조(해양수산부) ① 〈생략〉

-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 찰청을 둔다.
-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비교 ―

- ① 경찰청장의 경우 그 임명의 근거가 「경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에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단서 조항으로 자리잡고 있어, 경찰청장과의 법 체계상의 부조화, 기관 위상 저하의 문제가 있었다.
- ② 또한 경찰청장은 임기 2년으로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해양경찰청장은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양경찰청장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5년 '조직발전 T/F'를 구성하여 「해양경찰청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는 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되기 전이었던 까닭에 조직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체 중단되었다. 이후,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상배 의원이 「해양경찰청법」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반대로 상임위 소위심사도 받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이 「해양경찰청법」을 재차 발의하였으나, 이 역시 국토해양부의 이견과 내부적인 반대의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 ● 내부적인 반대의견 ―

- ① 「해양경찰청법」이 제정되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으므로, 제정실익 없음
- ② 조직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개정이 곤란할 것을 우려
- ③ 해양경찰청장이 정무직화 될 것을 우려
- ④ 해양경찰 신분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로 전환될 것을 우려

그러던 중 2014년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제정을 재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에 따른 조직 해체와 함께 「해양경찰청법」 제정 추진은 중단되고말았다.

● ● 「해양경찰법」추진 경과 -

연도	대표발의	주요내용	비고
2007년 (17대국회)	이상배 (한나라당)	조직(해경청-지방청-해경서) 직무(경비 · 안전 · 해양수사 등 나열) 목적(해양안보 · 해양주권수호 등 명시)	관련부처의 조직법 별도 제정 이견
2011년 (18대국회)	김을동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발의안과 유사	국토해양부 등 이견 (안전, 교통 임무중복)
2014년	_	※ 연구용역 진행 중 세월호 사고와 조직 혀	해체로 제정 중단

2.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해양경찰법」 제정 재추진

● 대통령 발언('17, 9, 13, /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中) -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경찰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함"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17.9.13.)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해양경찰의 근본적인 조직 개선과 해양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경찰은 그 해 11월 23일 '해양경찰 조직법 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양경찰법 제정 추진이라는 긴 항해의 돛을 올렸다.

2018년 1월에는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법」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과거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2차례나 법 제정이 좌초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사전 의견조회를 먼저 실시했다.

의견조회 초기에는 "현재의 직제로도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으니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된 해양경찰의 설득으로, 반대하던 부처들이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점차 공감하며 제정에 찬성하였고,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법안을 완성시켜 나갔다.

● ● 관계기관 사전 의견 조회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직법적 규정을 최소화하기 바람
법제처	해양경찰만의 특색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해양안전 확보 등)
해수부	'해양오염 예방'을 '해양오염 예방활동'으로 수정
인사 혁신처	해경청장 자격을 해경 출신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 제한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

「해양경찰법」제정은 2018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개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국민이 염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법」제정'을 목표로, 2018년 12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최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2019년 1월 23일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인천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국민이 바다안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해양경찰법」제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해양경찰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발의된 「해양경찰법」은 같은 해 4월 5일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으며,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의결을 거쳐 국회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2일 17시 50분, 「해양경찰법」은 제37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한 208명의 국회의원 중 194명이 찬성함으로써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후 8월 9일 정부로 이송된 「해양경찰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515호로 공포되었다.

● ● 법안 발의 후 관계기관 의견 조율 -

행안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비상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수용
경찰청	경찰청과 해양경찰청간 청장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 상호 협의 → 해양경찰 출신의 청장이 임명 될 수 있도록 유지
인사 혁신처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청장을 바로 아래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므로 해경에만 두 계급 승진임용의 특례 인정은 부작용 우려 → 전문성 갖춘 자체 청장의 필요성에 공감, 원안 유지

● ● 주요 추진 일정 -

추진 내용	추진 일자
「해양경찰법」 제정 추진 계획	2017. 11. 23.
「해양경찰법」 제정 당 · 정 · 청 협의회	2018, 11, 13,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 지역 토론회	2018, 12, 10,
「해양경찰법」 국회 발의(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01. 11.
「해양경찰법」 제정 인천 지역 토론회	2019. 01. 23.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2019. 01. 31.
국회 농림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 의결	2019, 04, 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	2019. 07. 31.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08, 02,
대통령 공포	2019, 08, 20,
「해양경찰법」시행	2020, 02, 21,

제 3 절

제정 추진 배경

M

1.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은 여가문화의 확산을 불러왔으며, 이는 해양 레저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바다와 보다 친숙해졌으며,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양경찰에게 해양의 안전이 확보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의 조성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 의한 통제와 소통 장치 없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官' 주도의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해양경찰 정책은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결정이 되면서 행정실패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을 더욱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독립적인 외부인 사에 의해 정책을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2. 공권력행사기관으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 법률 부재

법치주의 원리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 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말한다

이 원리는 원래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뜻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정신⁰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서 검찰청과 경찰청은 별 도의 독립된 법률로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국내			해오	4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일본
「경찰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US CODE Title,14」	「해상보안청법」

해양경찰청 역시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⁶⁶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염려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함께 공존했었다.

- 05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제2항)
- 06 해양경찰의 직무 수행의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라는 추상적인 임무와 이외,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직무를 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등 법률적 근거 기반이 취약하였다.

3. 해양경찰의 특수한 직무를 반영하지 못했던 법제 현실

해양경찰은 창립 초기엔 영해경비와 어업자원보호 업무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각종 해양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수색·구조 및 안전'을 비롯해 '해양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방제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및 독도·이어도에 이르는 '해양 주권 수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직무가 추가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육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 해양경찰의 복잡·다양한 직무

치안	수색 ·	주변국	재난	해양	환경	밀수 ·	마약
유지	구조	대응	관리	안보	보전	밀입	
경찰청	소방청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관세청	식약처

그러나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상황에 대응한 해양경찰의 직무 범위와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법제도적으로는 해양경찰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었다.

해양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에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직무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렇듯 해양경찰의 직무 범위 규정은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의 정체성과 책임성,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4. 해양사고 발생 시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전문성 부족'

해양경찰의 직무는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특수 분야다. 특히 국가 간 대외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해양경찰 조직이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려면 다른 부처와 차별화된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여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역대 청장 16명 중 14명이 경찰청 출신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해양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경찰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해양경찰청장으로의 임명이 가능하였고⁰⁸, 해양경찰청 내 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 2명에 불과하여 후보자가 많은 경찰청 소속 치안정 감(6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자체 청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인재양성과 외부 전문가 인재 영입, 그리고 체계적인 장비 도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이 요구되었다

5. 사법개혁을 반영할 법적 기반 마련 필요

현재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후 어떠한 형태로 논의의 결정이 나더라도 법제도적인 개선과 변화가 향후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해양경찰법」 이전에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뿐이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를 반영시킬 수 없는 입법적 공백 상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⁶⁹

- 07 '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이후 해양경찰청장은 16명이다.(경찰청 출신 14명, 해양경찰청 출신 2명)
- 08 정부조직법 제43조와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경찰과 해양경찰)에서 임명이 가능함
- 09 검찰은 「검찰청법」, 경찰은 「경찰법」,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상호 간 유기적이고 조정된 내용을 반영 가능

「정부조직법」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은 사정기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주로 일반 부처의 직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수사권 조정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은 자체 조직법 체계 내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을 수용하는 반면에 해양경찰은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기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수사권 조정 결과가 법률에 포섭되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법률(경찰법)과 대통령령(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달리 반영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다.

6. 조직의 기반 약화와 신분의 불안정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요구된다. 즉,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그 내용적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개편과정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학회와 전문가의 검증은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 나아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조직개편이 조직구성원들에게 가져올 인간적·사회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조직구성원의 생산성·사기 등에 적지 않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설계·추진하는 조직 개편에서 비롯되는 조직 내부적 변화는 조직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법률로서 조직과 직무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정부는 대통령 령인 「직제」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이는 조직과 신분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 져 조직의 기반이 약화되고 직원의 사기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이후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국민안전처 등으로 소속과 명칭이 자주 변경됨과 함께 업무의 범위 또한 변화되었다.

이러한 조직 변천 과정은 국민들의 여망이나 소속 직원들의 의사보다는 주로 중앙정부 판단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왔다.

● ● 해양경찰의 조직 변천 과정



제 4 절

외국의 해양경찰기관 조직법

TTT

해양선진국 및 주변국의 해양경찰기관은 대부분 개별 조직법 체계를 갖추고 해양주권수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 해양경찰기관을 갖고 있는 美·英·日 등은 조직 및 기본임무 등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대외적으로 해양공권력을 확립하고 있다.

● ● 주요국가 해양경찰 개별법령

국가	관련근거	국가	관련근거
미국	「US CODE Title.14」	필리핀	「Coast Guard Law of 2009」
일본	「해상보안청법」	호주	「M.S. Authority Act 1990」
영국	「Coast Guard Act, 1925」	인도	「Coast Guard ACT, 1978」

1.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

국토보안부(DHS) 소속으로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비·구조·범죄 단속 등 한국의 해양경찰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영미법계인 미국은 연방법인 「US CODE 14」편에 조직, 임무, 사령관의 권한, 인사, 예산, 복지 등 해안경비대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법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본임무 뿐만 아니라 승선임검, 수사, 구속권, 다른 기구와의 공조권, 세관업무 수

행권 등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이를 통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美 해안경비대 창설 배경 -

창설	세관감시부와 인명구조부가 USCG의 전신으로, 두 기관의 업무가 바다라는 공간에서
배경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1915년 통합하게 되면서 해안경비대로 발족
직무 확대	1936년 해상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연방법을 다른 기관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이 되었으며, 1939년 등대·항로표식 담당기관이 되었고, 1942년 선박 수리·개조 허가, 선박검사 직무까지 확대, 현재는 항해의 안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재산보호 관계된 거의 모든직무 수행

2.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JCG)

국토교통성 소속의 외청으로 신분은 군이 아닌 공안직이며, 해양경비, 해양오염방지, 해상 범죄예방·진압, 해상보안 등 한국의 해양경찰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해상보안청법」은 조직법으로서 해상보안청의 설치, 목적, 임무, 직무범위, 해상보안관의 신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 日「해상보안청법」 창설 배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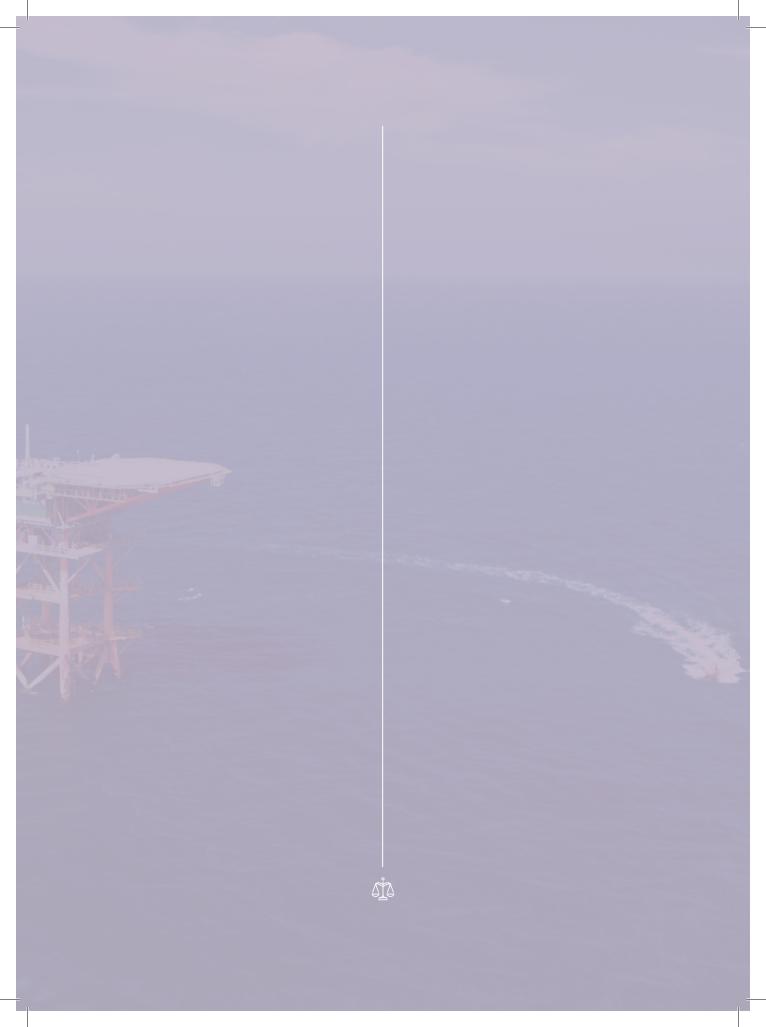
시대적	2차대전 후 밀항과 밀수가 횡행하는 무질서 상태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행정
상황	기관들이 설립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
제정	미국 해안경비대의 간부직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해상보안의 일원적인 관리기관 설치를 권고하여 미국의 해상보안청을 모델로 1948년 「해상보안청법」 제정 후 해상보안
배경	청을 발족

제2장

구성체계와 의미

제1절.「해양경찰법」 구성체계 _ 28

제2절. 「해양경찰법」 제정의 의미 _ 29



「해양경찰법」구성체계



「해양경찰법」은 총 5개의 장과 21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목적, 해양경찰의 책무, 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의 날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제5조~제10조)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재의요구,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해양경찰청(제11조~제15조)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직무, 직무수행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제16조~제18조)

해양안전 확보 노력, 협력, 국민 참여의 확대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제19조~제21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연구개발의 지원 등

●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경찰법」의 제정의 의미



1. 일방적 행정에서 '민주적 소통' 행정으로

해양경찰위원회(제2장) 국민참여의 확대(§18)

제정 前

해양경찰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官 주도의 일방적 행정' 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견제를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들은 잦은 조직 개편과 지휘부 변경에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행정실패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제정 後

국민으로 구성된 '해양경찰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의결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해양경찰행정의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은 향상될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 정책은 중·장기적 틀 안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기능을 작동시켜 정책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2. 해양경찰 '전 직원이 전문가'가 되다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12) 전문성 확보(§19)

제정 前

국민은 "바다가 더욱 안전해야 한다"고 염원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양경찰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다양한 현장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에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그간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제정 後

내부인재 양성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외부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체계는 전 직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문성 확보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바다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3. 해양경찰 '고유의 Brand'를 정립하다

책무(§2), 직무(§14)

제정 前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주권수호 · 해양 안전, 치안 확립, 오염 방제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정부조직법에는 해양경찰의 사무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직무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 부재로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의 책임성과 조직의 정체성도 불투명하였고, 국민에게도 예측가능성 확보가 곤란하였다.

제정 後

해양경찰이 실제 수행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직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조직의 정체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를 비롯한 해양관련 범죄수사와 치안정보 수집, 해양오염 예방 활동과 국제 협력 분야까지 직무를 명시하여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경찰 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4. 뿌리 깊은 조직이 되다

해양경찰청(제3장)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13), 직무(§14), 법률유보의 원칙

제정 前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해양경찰은 직무가 구체화된 법률이 없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상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법 외에는 별도 조직법적 기반이 없어 조직이 빈번하게 개편되어 왔다.

제정 後

해양경찰의 조직·직무·신분을 명확히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조직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정부조직 17개 외청 중 3번 째¹⁰로 개별조직법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의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양경찰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5. 외부 출신 청장 → 해양 전문가 자체청장

청장임명자격(§12)

제정 前

역대 해양경찰청장 16명 중 14명이 경찰청 출신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마다 청장의 '전문성 결여와 바다에 대한 경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법체계상 해양경찰은 경찰청에 비해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체청장 배출이 어려웠던 현실로 조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자존 감·자부심도 낮은 상황이었다.

제정 後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을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전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체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해양에서 다양한 훈련과 위기 대처 경험을 쌓은 자체 청장은 국가적 재난 시 신속·정확한 판단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도 청장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게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역량은 한층 제고될 것이다.

10 검찰청의 「검찰청법」('49), 경찰청의 「경찰법」('91)

6. 국내유일 '해양수사기관의 자긍심'을 높이다

목적(§1), 책무(§2), 직무(§14), 직무수행(§15) 사법개혁

제정 前

해양경찰은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수사·정보의 기능 축소와 인력 감소로 인하여 수사·정보 요원의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개혁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제정 後

해양 및 해양관련 치안을 담당하는 일반사법경찰기관임을 법률로 천명하여 해양수사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수사분야의 직무를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함과 이울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분야에서도 '해양관련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본 법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개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7. '미래 발전 법적 인프라' 를 구축하다

해양안전 확보 등(제4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제5장)

제정 前

해양경찰의 소관 법률은 4개(「해양경비법」, 「수상구조법」, 「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예방법」)에 불과하며, 해양경찰은 주로 타 부처 소관법률(「해사안전법」, 「유·도선법」 등)을 근거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가 발생하여도 타 부처 소관법률을 주도적으로 개정하여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장비 도입 및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미래 변화에 대처하기가 곤란했다.

제정 後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 업무의 기반이 되는 모법으로서 이 법을 토대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양경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법률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장비 도입·운영·관리 및 연구개발사업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법적 인프라가 마련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미래를 바라보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장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_ 36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_ **48**

제3장. 해양경찰청 _ 71

제4장. 해양 안전 확보 등 _ 90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_ 97

부 칙_106



제 1 장

총칙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기관이며, 해양에서의 주권수호· 안전관리·치안질서 확립·오염방제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법」 제정은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총칙에서는 「해양경찰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서술하였다. 본 법의 목적과 함께 해양경찰의 책무. 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의 날 등을 규정하였다.

1. 목적(제1조)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안전과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해양경비, 해양주권의 수호, 해양 오염방제 등 일반적인 경찰법제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하고 고유한 직무수행의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찰법제와 다른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목적 규정은 「해양경찰법」 시행 이후의 제도 운용의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므로 사후적 법률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해당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때의 지도적 원리 및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 등 법령정비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이해성 및 명확성을 촉진하다

나, 조문 해설

제1조는 왜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목적과,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는 지를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해양경찰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목적규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 안전과 해양 치안 확립을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였다.

'해양주권 수호'라는 개념은 해양경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新해양시대에 발맞춘 해양경찰 직무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가장 포괄적인 표현이다.

'해양 안전'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해양안전 확보가 국민의 염원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치안 확립'은 해양에서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적을 표현한 것이다.

용어의 의미

▶ '해양'의 의미

'해양'의 개념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해양 정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는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내수면'이 '해양'에 포함되는지는 법률마다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다." 「해양경찰법」에서 해양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해양환경 변화에따라. 해양경찰의 직무범위가 변동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 '해양주권 수호'의 의미

'해양주권 수호'는 해양경찰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직무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해양에서 가장 주요한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독도에서의 한 · 일간 충돌, 불법조업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흉포화, 북한과 NLL 대치 등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로 인식되고 있다.

● ● 해양주권 수호의 구체적 예시

- ① 독도 및 이어도의 주권적 권리 보호
- ② 영토 및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에 관한 위법행위 방지·제재(「영해 및 접속수역법」)
- ③ 관할 수역에서 국내·외국 선박의 권리 보장 및 불법행위의 억제(「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 붕에 관한 법률」 및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④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 어로행위 단속 활동(『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 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⑤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해적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해적선의 나포 및 수사(「국 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관한 법률」)
- ⑥ 그 밖에 해양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활동

다. 입법례

1) 국내 유사기관 입법례

과거 2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양경찰청법」안과 유사기관인 경찰청, 소방청의 입법 례 등을 참고하여 목적 규정을 축조하였다.

참고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 ● 참고 입법례 -

법 률 (법 안)	목적규정
「해양경찰청법」 (2007. 이상배의원 발의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조직 및 직 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법」 (2011. 김을동의원 발의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수호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 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 해양경찰기관 입법례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미 연방법(TUS CODE: Title 14,)에 조직,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직의 창설과 직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연방법 제14편 -

제1조(해안경비대의 창설) 해안경비대는 1915년 1월 28일에 창설된 군사조직으로서 언제나 미합중국 국군에 속한 군대이다.

제2조(주된 임무) 해안경비대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연방법령 집행 또는 집행지원
- ② 해상 항공감시. 항공차단활동
- ③ 공해 및 해상, 해저에서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상 필요한 운항보조장비, 쇄 빙시설 및 구조시설 개발 · 설치 · 유지보수
- ⑤ 공해 및 영해에 대한 해양학적 연구 수행
- ⑥ 전시 미국 해군에 속한 특수부대로서의 기능 등

일본은 태평양전쟁 후 항행안전 확보와 밀항·밀수 등 악질 범죄 단속을 위해 1948년 「해 상보안청법」을 제정 후, 해상보안청을 설립하였다. 「해상보안청법」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조직의 설립 목적과 임무를 파악할 수 있다.

● 일본「해상보안청법」-

제1조 ①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반을 예방·수사·진압하기 위해서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이 소관하는 외국으로서 해상보안청을 둔다.

제2조 ① 해상보안청은 법령의 해상에서의 준수,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해상에서의 선방의 항행 질서의 유지, 해상에서의 범죄의 예방 · 진압, 해상에서의 범인의 수사 · 체포, 해상에서의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 항로표지에 관한 사무 그 밖에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부 및 이에 부대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해상의 안전 · 치안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라. FAQ

01 제명을 「해양경찰청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명은 법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 법적 성격을 가질 때는 「해양경찰법」, 조직·직무 등을 규정한 조직법적 성격일 경우 에는 「해양경찰청법」으로 제명을 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법」은 청장 및 직무 등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차

장, 하부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규정을 두지 못하여 조직법적 색채는 상대적 으로 열다

반면에 해양경찰위원회, 해양안전 확보 노력·협력·국민참여 확대,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장비 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해양경찰 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기본법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02 「해양경찰법」을 해양경찰의 조직법으로 볼 수 있는지?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운영,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한 해양경찰의 조직법이자 기본법이다.

제3장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의 직무,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 등은 대표적인 조직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 기본법과 조직법의 비교 -

(조직법) 조직 및 직무에 대해 규정

(기본법) 조직법적 요소를 포함하여 조직의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와 직무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입법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본법의 각 규정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03 「해양경찰법」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해양경찰법」의 제정은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①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권 행사는 작용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조직법적 근거도 필요하다는 점, ②복잡하고 다양한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다는 점, ③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를 담을 법적 틀이 없다는 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었다.

2. 해양경찰의 책무(제2조)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의 직무 중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집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책무규정은 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권한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부처·기관의 권한과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수의 타 부처 소관 법률에 분포되어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수행되고 있는 해양경찰의 업무범위를 간접적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에서의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문이다.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직무집행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있다.

《 제2항 》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독도, 이어도,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것과, 일반사법경찰로서의 기본적 직무수행인 치안질서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책임을 부여한 조 무이다

용어의 의미

▶ '해양 영토'의 의미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 국의 권리와 관합권이 인정되는 해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3항》

해양에서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적인 정책추진 및 조직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방적 행정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규정이다.

다. 입법례

책무와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선언적인 의무 등을 정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법령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여하고 있으며, 특정 정부부처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입법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조직법이자 기본법인 「해양경찰법」에 '책무' 규정을 둔 이유는, 해양 안전관리, 국익 보호, 해양영토 수호 및 치안질서 유지 등 해양경찰의 소관 직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라. FAQ

01 책무조항과 직무조항의 차이점은?

직무규정은 해양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나타내는 규정이며, 책무규정은 해양경찰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업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책무규정은 해양경찰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 안전관리와 치안질서 확립 등 「해양경찰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이 수행해야할 법령상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02 해양영토 수호는?

해군에서 수행하는 '해양영토 수호'는 군사력에 대한 대응에 한정된다. 해양경찰에서 수행하는 '해양영토 수호'는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해양에서 주권을 보전하려는 비군사적 대응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해양영토 수호' 업무로는 일본·중국의 독도·이어 도 인근해역에서의 과학조사 차단,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이 있다.

3. 권한남용의 금지 등(제3조)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조문의 취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기관인 해양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조문이다.

나. 조문 해설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과 함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제1항의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공권력 행사의 제한점을 천명한 것이다.

다. 입법례

● 입법례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비법」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이상배, 김을동 의원안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 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해양경찰의 날(제4조)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직무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작용법이지만, 그간 '해양경찰의 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어 동법 제5조의2에 '해양경찰의 날'을 규정해 오고 있었다. 이제 해양경찰 조직과 직무를 포괄하는 「해양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나. 조문 해설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 ● 참고자료: '해양경찰의 날' 연혁 -

*2019년 9월 현재

구분	창설(1953~)	외청 승격(1996~)	EEZ 발효기념(2011~)
일자	10. 21.	12, 23,	9. 10.
의미	'경찰의 날' 공동	해양경찰 창설일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

'해양경찰의 날(9. 10.)'은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의식을 고양시키며 또한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다. 입법례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기념일에 거행되는 각종 행사를 대통 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방의 날', '문화재 방재의 날', '발명의 날' 등은 '해양경찰의 날'과 같이 개별 법률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9월 현재

〈대통령령에 지정된 기념일〉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사 내용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 는 행사를 한다.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 의 사명감 고취, 행사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 자의 갱생의지를 촉진

〈소방기본법 등 개별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사 내용	근거 법률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	「소방기본법」 제7조
문화재 방재의 날	2, 10,	문화재청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함	「문화재보호법」 제85조
발명의 날	5. 19.	특허청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 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함	「발명진흥법」 제5조

라. FAQ

01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념일과 개별법에 지정된 기념일의 차이는?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기념일 행사는 정부가 주관한다.

반면에, 개별 법률에 지정된 기념일은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 후 행사를 시행한다는 점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차이점이 있다.

해양경찰위원회

제2장은 해양경찰위원회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비용과 시간의 증가, 결정지연 등의 단점이 있으나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신중한 결정, 정책의 공정성, 각계의 의견수렴 등의 장점도 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행정위원회처럼 대외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경찰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고, 의견 청취권과 자료 제출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본 법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1.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 \cdot 개정 \cdot 폐지,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cdot 관리 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 · 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잦은 조직개편과 지휘부의 변경으로 주요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내부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신설로 대내외적 변화에 관계없이 중·장기적 비전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해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투명성·공정성 등이 확보될 것이며, 해양수산부에 소속되는 만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간 원활한 업무 협조와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양경찰 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경찰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위원회의 신설과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 경찰위원회를 두고 해양경찰의 주요 법령, 인사, 장비 등 주요 정책과 인권 보호와 같은 주 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지휘부 결재만으로 시행되던 해양경찰청의 주요 행정은, 앞으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제1호)

● ● 심의 · 의결사항 예시(제1호) —

(법령)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은 「해양경찰법」을 포함 총 30개이며, 이 중 법률은 10개, 시행령은 9 개, 시행규칙은 11개가 있다. (2019년 9월 기준)

〈단독 소관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해양경찰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규칙」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공동 소관법령〉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밀항단속법」 (법무부 공동)		
「경범죄처벌법」 (경찰청 공동)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경찰청 공동)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경찰청 공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부, 법무부, 해수부 공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부, 법무부, 해수부 공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경찰청 공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경찰청 공동)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공동)		

(행정규칙) 해양경찰청 행정규칙은 총 193건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2019년 9월 기준)

구분	구분	훈령	예규	고시
개수	193	132	41	20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상정 시기는 제·개정 등 계획보고가 지휘부 결재를 득한 후이다.

(기본·관리계획) 법령에 따른 기본·관리계획은 총 9건으로 이 중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5건 이다.('19.8.20. 기준)

연번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근거법령	주기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 / 시행계획	경찰복지법 제5조	5년 / 1년
2	수난대비기본 / 집행계획	수상구조법 제4조	5년 / 1년
3	연안사고 예방 기본 / 시행계획	연안사고예방법 제5조	5년 / 1년
4	해양경비기본계획 / 해양경비계획	해양경비법 제6조	5년 / 1년
5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	1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항목(기본·관리계획) 증가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제2호)

인권보호 정책으로는 진술 녹음제와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방안 등이 있고,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는 유착비리 근절 대책 등이 있다. 인권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 ● 제2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

- 1.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2. 해양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 · 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 3. 해양경찰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에 관련된 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제3호)

● 심의 · 의결사항 예시(제3호) -

(인사) 전문 인력 및 여경 채용 비율 향상, 지방청에 인사업무 일부 위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신임·기본·전문교육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수당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 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

● ● 심의·의결사항 예시(제4호) -

(장비 도입)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경찰 장비증가 목표기획서」 개정 사항에 관한 사항

함정(335척), 항공기(24대), 개인화기(7,208정), 공용화기(731정), 함포(113문) 및 진압 장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로 부치는 사항(제5호)

그 밖에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위원회의 의결 로써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 참고 자료: 경찰위원회 의안목록 분석('19.1~7.)

(의결결과) 보고안건을 제외한 의결대상 중 원안의결 39건(66%)

의안건수	법령	해저그치	행정규칙 주요정책		고
의간인구	H <u>0</u>	86II-i	행성규칙 구요성색 -	경찰청	위원회
99건	24	36	3	34	2

(의결결과) 보고안건을 제외한 의결대상 중 원안의결 39건(66%)

의안건수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 류
63건	42	19	2

《 제2항 》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권한을 통해,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해양경찰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거나 확대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3항》

재의요구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두었다.

이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재차 심의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이므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능할 것이다.

다. 입법례

유사 위원회인 경찰위원회를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조문을 구성하였다.

특히,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17.11.3.)」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는데, 경찰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에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을 담았으나. 해양경찰위원회이 경우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규정하였다.

제3항의 재의요구권은 일반적인 위원회를 규정하는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위원회의심의·의결에 대해 재차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장관에게 부여한 재의요구권¹²을 도입하였다.

^{12 「}경찰법」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해양경찰법」에 도입한 규정

「경찰법」에 규정된 심의 · 의결사항(제9조)	「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심의 · 의결사항(제5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의 무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국가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FAQ

01 해양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해양경찰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행 정청(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법령 등 제·개정, 기타 여러 정책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자문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해양경찰위원회는 의결권한은 가지나,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없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¹³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등'으로 두가지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명칭을 '자문위원회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해양경찰위원회처럼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도 있는 만큼 해양경찰위원회를 단순히 자문위원회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제6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정수, 임기, 임명 절차,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5조에 근거한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 아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 전원 비상임위원으로서 구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구성하였다.

7명이라는 위원 수는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고려한 것이며,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위 원을 선정할 것이다.

● ● 역대 경찰위원회 위원 현황 -

기수	법조계 (변호사)	학 계		OI 크게	여성·	공무원	
		법학	(경찰)행정	기타	언론계	시민단체	(정무직 차관급)
17	2	1	1		1	1	1
27	2		2		1	1(女)	1
37	2	1	1		1	1(女)	1
47	2	1(女)	2		1(女)		1
57	2	1	1		1(女)	1(女)	1
67	2			2(女1)	1	1(女)	1
77	2	1	1		1	1(女)	1
87	2	1	1		1	1(女)	1
97	2	2			1	1(女)	1
107	2(女1)	1	1		1	1(女)	1

참고로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였다.

●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안)」-

제2조(위원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2항 》

경찰행정이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공권력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위원회에서 법령 제·개정, 수사 정책 및 인권과 관련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 중 2인은 법관¹⁴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용어의 의미

▶ "법관"의 의미

「법원조직법」제5조(판사)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관"이란 ① 대법원장 ② 대법관 ③ 판사로 정의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찰위원회에서는 법관의 자격을 확대 해석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의미하기도 한다.

《제3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도록 규정하였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임명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은 후 그중 적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심의·의결의 권위를 높이도록 하였다.

《 제4항 》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 선거직공무원,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방 등의 소속이었던 자에 대한 취임제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을 적극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최소한의 제한조건만을 규정한 것이다.

14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을 말하며,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다.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¹⁵으로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말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 될 수 없다.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다.

여기에서 '경찰'이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과 '해양경찰'을 모두 포함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4호)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¹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종류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국무의원, 차관 등 정치적인 직종에 속하는 공무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입법례

● 입법례:「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FAQ

01 경찰위원회에 있는 정무직 상임위원이 해양경찰위원회에는 없는 이유는? 「해양경찰법」 제정안에서는 위원 중 1인의 위원은 정무직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¹⁶ 본문에 따라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

¹⁶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시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의결되었다.

이에 반해 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은 정무직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나 이는 2009 년 4월 해양경찰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로 행정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가 아닌 위원회에 정무직인 상임위원을 둔 사례는 없었다.

02 해양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없어도 무방한지?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과 특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을 둠으로써 심의·의결의 전문성 확보, 차관급 인사인 해양경찰청 장 후보군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 위원회 운영과 부·청간의 원활한 업무 조율 등이용이한 부분이 있다.

원칙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는 없었으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비상임위원만으로 운영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제7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가. 조문의 취지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당연퇴직과 면직 사유를 규정하여 위원에 대한 신분 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3년 으로 정하였고, 연임금지와 보궐위원의 임기도 규정하였다.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면, 심의·의결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독립 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용어의 의미

▶ "연임 금지"의 의미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거듭하여 연속적으로 그 위원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금한다는 뜻이다.

▶ "중임 금지"의 의미

일정한 기간과 연속성에 구애 받지 않고 2번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제2항 》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선거직공무원으로 취임할 경우,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군인 등에 임용되거나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취임제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연 퇴직토록 하였다.

사전 결격사유인 제6조제4항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이 임기 중에 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항》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아니면 면직될 수 없도록 하여 위원의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위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공정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유도하였다.

《 제4항 》

위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상의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와 정치운동금지의 의무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임기 내 뿐만 아니라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취득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는 의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재강조하는 측면에서 정치운동금지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 · 주재(丰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용어의 의미

▶ "직무상 비밀"의 의미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다. 입법례

● 입법례:「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4. 재의요구(제8조)

-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제5조제3항)을 부여하였다.

이 규정은 제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자기완결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재의요구 방법과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10일의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 본문(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 제2항 》

재의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7일의 기산점 역시 「민법」 제157조 본문(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재의요구를 받은 날의다음날부터이다.

다. 입법례

「경찰법」의 경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경찰위원회 규정」에서 재의요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입법례:「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재의요구)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의결하여야 한다.

5. 의견청취 등(제9조)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문으로, 의견청취를 통해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이고 원활한 심의·의결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

- 5.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사무기구와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한다.
 - 리)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충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의 의미

▶ "관계 공무원"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는 국가경찰공무원, 그리고 해양오염방제국과 해상교 통관제과(VTS)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 "관계 공무원"은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제2항 》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응하도록 명문화함으로 써 공무원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의결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와 일맥상통하는 조문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방안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 ●「경찰공무원법」 -

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입법례

의견청취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이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의 자기 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법에 직접 명시하였다.

● ● 입법례:「경찰위원회 규정」-

제9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 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원회의 운영 등(제10조)

-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조문의 취지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인 심의사항은 해양경찰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간사 업무는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수행하도록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에 명시 하였다

● ●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안) -

제7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제2항 》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조문으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위원회 소속 위원 7인 중 4인 이상이 해당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 중 절반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3항》

「해양경찰법」에는 위원회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사항만을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데, 이는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의 입법적 근거가되다.

다. 입법례

● ● 입법례:「경찰법」-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경찰청



이 장은 「해양경찰법」의 조직과 관련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명칭을 해양경찰 청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절차와 임명자격을 명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서의 신분과 해양경찰 등을 규정하였다.

1. 해양경찰청장(제11조)

-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가. 조문의 취지

경찰청장의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절차 규정이 「경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해양경찰청장의 경우는 「경찰공무원법」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문 중, 단서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법체계 부조화, 기관 위상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경찰청장의 계급은 법률인 「경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은 대통 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어 대등한 국가기관의 장임에도 불 구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에 각각 규정되는 법체계상 모순이 있었다.

게다가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경찰청장과 달리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어떤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았다.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임기·임명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학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청장은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공 무원"의 신분으로 규정하였다.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제2항 》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법」에서 규정한 경찰청장 임명과 동일한 방식을 선택함으로 써, 경찰청장과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3항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다.

해양경찰청장의 역할은 해양경찰에 관한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워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 제4항 》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경찰청장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였고,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였으며, 중임을 제한하였다.

다. 입법례

유사입법례로「경찰법」제11조가 있다.

● 입법례:「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 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삭제
-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 FAQ

01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해양경찰법」에는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 여부는 국회 차원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 (도입취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사법부의 구성을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 2000년도에 도입 - (청문대상) 헌법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23인(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및 개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 임명동의는 불필요한 34인(각부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회에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해양경찰법」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찬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 '17, 12, 12, /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등) ③ 부득이한 사유로〈중략〉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해 양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 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생략〉

〈정인화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 '18. 1. 19. /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제6조(임용권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제12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은 해양과 함정이라는 장소와 수단의 특수성으로, 상황에 따른 신속·정확한 지휘 판단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직무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독립 외청(1996년)으로 출범 후 16명의 해양경찰청장 중 14명이 경찰청 출신으로, 자체 청장은 2명에 불과하였다.

유사기관인 소방은 자체 청장, 군은 자체 참모총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해양 경찰기관 또한 자체 청장을 임명하여 전문성 및 조직원의 사기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 해양전문 지식과 위기 대처경험이 많은 자체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조직의 내부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 '96년 독립 외청 이후 역대 해양경찰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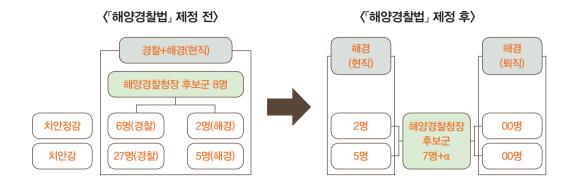
구분	계급	성명	기간	전 소속
1대	치안정감	조성빈	'96. 8~'98. 3	경찰청
2대	치안정감	김 대 원	'98. 3~'99. 12	경찰청
3대	치안정감	김종우	'99. 12~'00. 12	경찰청
4대	치안정감	이규식	'00. 12~'01. 11	경찰청
5대	치안정감	박봉태	'01. 11~'03. 3	경찰청
6대	치안정감	서 재 관	'03. 3~'04. 1	경찰청
7대	치안정감 ▷ 치안총감	이승재	'04. 1~'06. 8	경찰청
8대	치안총감	권동옥	'06. 8~'08. 3	해양경찰청
9대	치안총감	강희락	'08. 3~'09. 3	경찰청
10대	치안총감	이길범	'09. 3~'10. 9	경찰청
11대	치안총감	모강인	'10. 9 ∼'12. 5	경찰청
12대	치안총감	이강덕	'12, 5~'13, 3	경찰청
13대	치안총감	김석균	'13. 3~'14. 11	해양경찰청
14대	치안총감	홍 익 태	'14. 11~'17. 7	경찰청
15대	치안총감	박경민	'17. 7~'18. 6	경찰청
16대	치안총감	조 현 배	'18. 6~현재	경찰청

나. 조문 해설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을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하였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선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경찰청 치안정감 후보자가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치안정감이 2명인 체제 하에서 청장 후보군이 협소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여, 후보군을 치안정감(2인)에서 치안감(5명)까지 확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전문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치안감 이상까지 후보군을 넓히게 되었다.



다만, 전직 치안감 이상으로 후보군을 확대하더라도, 만 60세 미만자 중 임기 2년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자체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군이 확대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총경이상 간부의 내부경쟁 유도를 통해 후보군 전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 후보군 확대의 근거 -

- ① 역량이 출중한 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 ② 치안감도 치안정감과 동일하게 지방청장 사무를 담당하는 점
- ③ 전문성, 통솔력, 청렴성 등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친 점
- ④ 계급 조직으로서 지휘체계가 확고하고 직위에 따른 사무·역할이 명확하여 지휘체계 혼란 우려는 거의 없다는 점

다. 입법례

1) 국내 유사기관 입법례

소방청은 초기 소방방재청으로 출범 시 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자체청장을 담보할 수 없었으나, 2014년도 국민안전처 신설 시에 전문성 강화와 조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방청장을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 입법례:「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경찰청은 청장을 경찰공무원 중에서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있으나, 최근 진선미 의원이 청장 후보군의 인력풀 확대를 위해 치안감까지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개정안 -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8. 4. 4.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경찰법) 제11조제1항을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치 안총감으로 보한다"로 개정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 감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군 인사법」에 따라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¹⁷ 중에서 임명 하도록 하여 각 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 ● 입법례:「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 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외국 해양경찰기관 입법례

미국 해안경비대 대장은 4성 제독으로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연안경비대 준장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 ● 입법례: 미국(「U.S. Code: Title 14 - COAST GUARD」) -----

제41조(계급체계) 연안경비대 계급체계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주임준위, 사관생도, 준위 및 사병으로 구성

제44조(사령관의 임명) 사령관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연안경비대 장교로서 현역 진급예정자명단에 등재된 준장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

일본 해상보안청은 그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성 관료가 역임하였으나, 사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13년 이래 3대 연속 해상보안관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고 있다.

● ● 일본 해상보안청 역대 청장

대	성명	재임기간	출신
40	이와사키	'07.07.10 ~ '09.09.11	국토교통성
41	스즈키	'09.07.24 ~ '13.08.01	국토교통성
42	키타무라 타카시	'12.09.11 ~ '13.08.01	국토교통성
43	사토 유우	'13.08.01 ~ '16.06.21	해상보안감
44	나카지마 사토시	'16.06.21 ~ '18.07.31	해상보안감
45	이와나미 우이치	'18.07.31 ~ 현재	해상보안감

라. FAQ

01 해양경찰청장 후보군을 치안감까지 확대(2계급 승진)하는 법적근거?

「경찰공무원법」으로는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서만 승진 임용이 가능하나, 「해양경찰법」 부칙 제2조 타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찰공무원법」제11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02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로 기준한 이유?

'15년'은 전문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았으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다.

입법례:「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각 호 생략〉

입법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생략〉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중략〉15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자 (2~6호 생략)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②〈생략〉

-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 3. 법률 · 경제 ·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제13조)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 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조문의 취지

조직법의 구성요소로써 해양경찰의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여 현행 인적구성에 맞추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을 함께 포함하고 자 하였다

모두 해양경찰청 소속으로서 해양경찰 직무를 기능과 역할별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법의 적용 관계와 인적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현행과 동일하게 치안총감·치안정감· 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까지 11 계급으로 명확히 규정 하였다

「경찰공무원법」제2조(계급 구분)에서도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정하고 있으나 「해양경찰법」이 조직법인 관계로 해양경찰의 계급체계를 재차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제3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함으로써 현행대로 「국가공무원법」 과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공무원 신분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다. 입법례

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찰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입법례 -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 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查), 경정(警長), 순경(巡警)

〈「경찰법」〉

제23조(국가경찰공무원)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 경·경정·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衛)·경정(警長)·순경(巡警)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직무(제14조)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 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정부조직법」제43조는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해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 책임성이 부족해지고,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으며, 국민들 또한 해양경찰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특히,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작용, 조직, 구체적인 직무범위 등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법에서는 해양경찰이 실제 수행하는 복잡·다양한 직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시키고 직무수행의 책임성 및 국민의예측가능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해양경찰의 직무는 「해양경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소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직무가 있는 반면에,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다른 부처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직무도 있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를 해양경찰의 첫 번째 직무로 규정함으로서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해양에서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직무들의 수행과 관련된 개별법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 있다.

「해양경찰법」에 핵심적이고 골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도 통항안전 등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직무로서, 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개별법 규정들은 현재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다. 다만, 이 법들은 타 부처 소관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들이 2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어 해양경찰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해양경찰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기본적 직무만 담고, 관제업무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해양에서의 경호·경비·대테러작전'은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경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제2항 》

수사·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의무의 부담을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공법적 행위로써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수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에 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조직법인 「경찰법」과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의 경우 조직법 부재에 따라 법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

본 법에서는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직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였다.

한편, '해양관련 범죄'라 함은, ①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②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③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 중 해양관련성이 높거나 해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④어민 등 해양 관련 종사자의 해양 관련 범죄, ⑤선박, 조선소, 해양플랜트, 물양장 등, 해양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해양 관련 범죄를 의미한다.

범죄의 예방이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¹⁸

범죄의 진압이란 집단적 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이미 발생된 뒤에도 그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그 활동의 내용은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관련된다. 특히 집단적 범죄의 경우에는 예방과 수사 양자를 합쳐서 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¹⁹

범죄의 수사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더불어, 본 법에 해양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논의 중인 경·검 수사권 조정이 확정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참조

¹⁹ 경찰학개론

용어의 의미

▶ '해양 관련'의 범위

지난 2017. 7. 26.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간 수사관할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해각서 -

제4조(수사관할) ①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은 범죄 장소, 범죄의 성질,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해양 관련 범죄는 해양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관할한다.
 - 1.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 2. 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 3.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 중 해양관련성이 높거나 해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 4. 어민 등 해양 관련 종사자의 해양 관련 범죄
 - 5. 선박, 조선소, 해양플랜트, 물양장 등 해양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해양 관련 범죄

'해양 관련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해양경찰 정보활동 업무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공권력 행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라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된 조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치안정보'라 함은 치안정책의 수립·집행과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²⁰ 또는 치안과 관련되는 제반 기초정보²¹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²⁰ 강기택 외. 「경찰정보론」 2004

²¹ 이윤주 「경찰학개론」 2004

최근 정보경찰 개혁방안 및 수사권 조정과 연계하여 「경찰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해양경찰법」도 정보경찰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 개정할 예정이다.

● ● 정보기능 관련 개정(안) -

〈홍익표 의원 경찰법 전면개정안〉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소병훈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안〉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제3항》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은 해양경찰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직무로서, 이와 관련된 개별 법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의 사무는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직무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향후 주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해양오염방제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생략)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 · 점검

16.~20. (생략)

《 제4항 》

해양경찰은 필연적으로 국제 업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은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과 직접 맞닿아 연결되어 있어, 업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개선되는 선진 해양경찰의 직무와 제도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세계적인 해양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기구'란,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정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간 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IGO)'라고도 불린다. 국제기구는 일정한 목적 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조직체로서, 그 종류로는 그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등)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등)가 있다."

해양경찰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제기구와도 협력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의 국제협력 직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의 범위(제2조) 및 국제협력(제8조의2)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 입법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찰작용의 행사는 대통령령인 직제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직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조직법과 달리 직무조항을 각 호로 나열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한 사유는, 「해양경찰법」에는 포괄적인 직무를 규정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직무는 직제를 따름으로써 향후 업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사 입법례로 「경찰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임무) 규정이 있다.

● ● 입법례 : 「경찰법」

「경찰법」제3조	「검찰청법」제4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검사의 직무)	(직무)
1.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테러 수집·배포 2.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3. (생략) 「국가보안법」에 규정 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 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 획·조정

5. 직무수행(제15조)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의 기본적 원칙과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 제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경찰의 민주적 직무수행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입법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 써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관한 작용법 제정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무수행과 상호간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기본적인 직무수행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상관'이라 함은 자신이 직접 속한 부서의 직속상관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곳이 팀 (Team)이라면 '팀장', 계(係)라면 '계장', 과(課)라면 '과장'이 될 것이다.

《 제2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 수사'라 함은, 개별사건의 수사 개시·진행·송치, 수사대상·범위의 설정, 체포·구속 등의 수사방식과 법률 적용 등 사건 수사의 세부사항을 뜻한다.

구체적 수사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는 사후판단으로 시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으나, 수사업무의 경우 상관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제3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 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법률'이란, 현재 기본적인 경찰관 직무수행에 대해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그 밖의 해양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해양경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밀항단속법」 등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향후 해양경찰의 직무가 확대되어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될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적 근거가 된다.

다. 입법례

유사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에는 기본적인 직무수행의 원칙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 입법례 -

「경찰법」제24조(직무수행)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①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 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양안전 확보 등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은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다. 「경찰법」, 「검찰청법」 등 다른 조직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독창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법」만의 특색이 반영되었다.

1. 해양안전 확보 노력(제16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 · 어로 · 자원개발 · 해양과학조사 · 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 · 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 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국내 유일 해양종합 치안기관으로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및 지휘·통신 체계 마련 등의 기반 조성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고자 입법 하였다 또한, 해양구조방식 및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양사고 대응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후련 체계 마련 의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해양안전 보장과 사고 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입법적으로 명시하였다.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은 해양을 이용하는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되, 적대적 군사행위와 해적·해상강도 및 해양테러 행위 등 반인륜적 불법행위는 해양안전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비에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해양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안전 보장

합법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조문상 예시되지 않은 체육활동, 단순 항해선박 등 합법적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다.

《 제2항 》

해양안전 확보와 사고 대응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파악과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해양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 초고속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지휘·통신체계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고, 현대화된 해상 조난·안전 통신체계를 수립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3항 》

해양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상시적인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2. 협력(제17조)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재난과 해양사고는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구역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중대한 해양 재난·사고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재난 또는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양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제14조)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응원(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법적인 협력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용어의 의미

▶ '협력의 범위'

법률에 명확한 협력의 범위에 관한 정의는 없으나, 협력과 유사한 '응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재난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재난관리법」 제44조(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
을 요청할 수 있다.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
문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통계 등	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
경우	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 간부문의 협력 또한 필요하므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민간단체·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의 시책마련 및 계획수립 의무를 입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민·관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해양안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 2019년 해양경찰 민·관 협업 주요 정책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선, 구조협회 자립도 향상 민간해양구조대원 임무 확대 및 동원 체계 정립 등

다. 입법례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제14조), 재난관리법상 응원(제44조), 「소방기본법」 상 소방업무의 응원(제11조), 「일본 해상보안청법」 제3장(제27조)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다.

● 입법례

「수상구조법」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협조 등)

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 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법」 제44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본「해상보안청법」제3장(제27조)

- ① 해상보안청 및 경찰행정청, 세관,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범죄의 예방·진압, 범인의 수사·체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 협조하고 관계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을 구한 해상보안청, 경찰 행정청, 세관,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가능한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국민참여의 확대(제18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수렴된 의견을 해양 경찰의 직무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천 명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의 해양경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 대통령령으로 협의회 규정을 시행하는 입법례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나. 조문 해설

《제1항》

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여 해양경찰행정에 대해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 내부의 의견 조정과 협의가 아니라, 국민을 비롯한 행정 수요자들과의 직접적인 의견개진과 소통을 위한 장치로써, 국민이 직접 해양경찰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적 근 거이다

법률에 규정을 둠으로써 해양경찰의 항구적인 민간의견개진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이는 단순한 정책근거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임무의 기본적인 방향과 대국민치안서비스의 기초적인 시작을 법률로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참여(안) —

국민의 다양한 콘텐츠 ·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시행 온 · 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 향상, 안전문화 확산 등

《 제2항 》

국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국민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수렴된 의견과 결과를 적극적 행정의 측면에서 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 직무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용어의 의미

▶ '검토하여'의 의미

우선적으로 의견을 모두 접수한다는 취지를 전제한다.

▶ '필요한 경우'의 의미

수렴된 모든 의견 중에서 검토하여 타당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많은 입법례에서 의견 청취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견 청취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다.

다. 입법례

「행정절차법」제52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법」은 이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나아가 반영의무까지 규정하였다.

● 입법례 -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본 장에서는 해양경찰의 미래지향적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근 거를 담고 있다.

1.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제19조)

-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 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은 조직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해양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도 불구하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 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이에 교육·훈련 체계 발전을 통한 내부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입법적으로 마련하였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시키고, 내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훈련이나 현장 근무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분 야별 교육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상황지휘 역량교육 등 해양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가 된다.

핵심인재 양성(안) —

① (간부양성 아카데미 〈내부인재 촉진제〉) 미국, 일본 등 주변국 해양경찰에서는 우수한 실무자를 특별 선발 · 교육하여 경위급으로 고속 임용하는 제도로 해양경찰청도 젊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시켜야 함.

* 미국, 간부후보생 제도(OCS, Officer Candiate School)

- US 코스트가드 병장 계급(E-5)으로 4년 이상 경력자, 일병 계급(E-3)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 일반 학사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130여명, 21∼30세)하여 17주간 교육 후 소위(○-1, Ensign)로 임관

* 일본, 특별선발 이수과정

- 3년 이상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선발(40여명, 24~35세)하여 6개월~1년간 교육(해기사 2급은 6개월) 후 3등 해상보안정(경위급)으로 임용
- ② (간부후보생 육성 방안) 임용 시 채용 분야에 따라 '항해·기관 전문경과'를 부여하고, 필수 보직 경로에 따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여 유능한 함·정장, 상황대응 및 장비기술 전문가로 양성

《 제2항 》

해양경찰의 집행업무 분야는 해양주권수호, 해양안전관리, 치안질서 확립, 해양오염방제, 안보, 그리고 소방 업무에 이르기까지, 외청(17개) 기관 중에서도 가장 분야가 다양하다.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해양경찰의 다양하고 특수한 직무수행이 가지는 특성에 부합하여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용어의 의미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의미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에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개방형 직위'의 의미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개방형 직위)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한다

● ●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전문성 확보(안) -

- ① (변호사 채용)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여 해양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성 제고
- ② (핵심 간부 개방) 구조, 경비·작전, 과학수사, 홍보, 항공, 해양오염 방제 감식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보직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해양경찰 DNA를 가진 간부로 성장

다. 입법례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 FAQ

01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지? 「해양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는 '해양경찰 직무수행 기 반 조성의 실천방안'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내부인재 육성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규 정하였다

따라서,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의 의무를 「해양경찰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경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제20조)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 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 등"이라 한다) 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은 함정·항공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수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 장비를 비롯한 해양과 관련된 특수 장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조항은 협력(제17조), 연구(제21조)와 함께 해양경찰이 미래지향적인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정·항공기,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 및 각종 장비·시설 등의 해양경찰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조항에서는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입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적기에 마련된 해양경찰장비는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의 안전과 주권수호, 치안확립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장비 도입 및 관리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현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2항》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 조항은 해양경찰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써 향후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 입법례

「소방장비관리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다.

● 입법례 -

「소방장비관리법」제4조(기본계획 수립) 「소방장비관리법」제7조(재원 확충)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소방기본법」제6조에 시·도 관리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한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3.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21조)

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 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조문의 취지

앞으로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와 확대되는 직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규정이 요구된다.

본 조문은 국제해양시대의 도래에 따라 해양경찰의 직무영역을 확대하고 임무수행 역할을 보다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나. 조문 해설

《제1항》

해양경찰의 직무영역과 임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발전되어야 할 분야로 해양경찰청 장은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하여야 하며, 이는 미래의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이 될 것이다.

《 제2항. 제3항 》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원활한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사업으로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항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정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그러한 기관·단체의 종류를 직접 열거하고, 그 외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향후 이 규정의 위임명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1) 국공립 연구기관(제1호)

국가가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공단 등 약 80여 개 운영 중에 있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제2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 단 등 12개 운영 중이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제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0개가 있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제4호)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학 중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제5호)

민법과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 비영리) 중 치안 분야 연구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향후 치안분야에서 해양경찰분야로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 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제6호)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구 인력과 시설 등을 충 족하여 과기부장관이 인정한 연구소(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되지 않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별도의 대통 령령(「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할 것이다.

다. 입법례

「경찰법」및 「소방기본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다

● 입법례 -

「경찰법」제26조 「소방기본법」제39조의6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 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구 ·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하다. 1. ~ 7. 〈생략〉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 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 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조문의 취지

법령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의 마련과 법령 시행준비시간이 필요하다.

나. 조문 해설

「해양경찰법」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법」시행일 —

「해양경찰법」은 2019년 8월 20일에 공포되었기에,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2020년 2월 21일에 시행된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해양경찰위원회 규정」과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등 2건의 대통령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 하위법령(대통령령) 마련 -

「해양경찰법」제10조제3항에 따라「해양경찰위원회 규정」

「해양경찰법」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라「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2.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2조)

① 경찰공무원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가. 조문의 취지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해양경찰청장 임명절차'와 해양경찰청장 후보군을 '치안감'으로 확대하기 위해 타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5조의2에 규정된 '해양경찰의 날' 조문을 「해양경찰법」에 이관하였기에 타법 개정으로 삭제하였다.

나, 조문 해설

'해양경찰청장 임명절차'를 본 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 1항 단서를 삭제하였다.

● 타법 개정:「경찰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 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해양경찰청장 후보군'을 본 법 제12조에서 '치안감'으로 확대하였기에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양 법의 충돌을 방지하였다.

● ● 타법 개정: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 -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신설)

「해양경비법」제5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날' 조문을 보다 상위법인 본 법 제4조로 이관함으로써,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던 「해양경비법」 제5조의2의 조문을 타법개정으로 삭제하였다.

● ● 타법 개정: 「해양경비법」제5조의2(해양경찰의 날) ——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제4장



록

부록 1. 해양경찰법 조문 _ **112**

부록 2. 대통령령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안) _ 119

부록 3. 대통령령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안) _ 121



부록 1

해양경찰법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 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 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재의요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청

-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 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 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 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직무수행)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 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후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 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 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 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 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 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 관 또는 단체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부록 2

대통령령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위원의 예우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면직)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 제5조(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로한다.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2. 해양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 · 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 3. 해양경찰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에 관련된 사항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1 의안의 작성
 -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제8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 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 시행한다.

부록 3

대통령령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3조(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 2.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 3.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 4.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 5.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 6.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7. 그 밖에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4조(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 3.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 4. 주요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 5. 그 밖에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 나. 해양경찰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부 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 시행한다.

주요 참고 문헌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9.

성낙인. 헌법학 2019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하) 2019.

정인섭. 신국제법 2019.

김성돈, 형법총론 2018.

김성돈. 형법각론 2018.

한국법제연구원「해양경찰법」 제정 방안 마련 및 발전방향 연구 2018.

해양경찰백서 2018.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찰의 해양관련 사건 수사 관할 연구 용역 2015.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찰의 해양관련 사건 수사 관할 연구 용역 2015.

해양경비법 해설 2015.

손영태「해양경찰법」체계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토론문(노호래 군산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토론문(함혜현 부경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토론문(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토론문(김은기 나사렛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토론문(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인천지역 토론문(박주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제정 입법 인천지역 토론문(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제주지역 토론문(고현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해양경찰법 해설서



집필자 행정법무담당관 총경하태영 법 무 팀 장 경정 백대중 법 무 팀 원 경감 최병준 법 무 팀 원 경위 조성현 법 무 팀 원 경위 김지현 공 및 법 무 관 남 궁 명 감수위원 변 호 사 강 성 원 한국법제연구원 이 준 호